

사 업 명
국회의원선거관리 (1131-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선거1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국회의원선거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예산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국회의원선거관리	241,659	3,800	364,168	280,992	277,122	7,292.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관리일반) 국회의원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기반 구축·운영하기 위한 사업
- (선거운동관리) 선거벽보 첩부·철거, 선거공보 발송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사업

- (사전·선상투표관리) 원활한 사전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전투표사무 수행인력, 사전투표소 설비, 사전투표시스템 등을 구축·운영 및 (사전)투표일에 선박에 승선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없는 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상투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 (투표관리) 원활한 선거일 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투표사무 수행인력, 투표소 설비·운영을 위한 사업
- (개표관리) 원활한 개표실시를 위해 필요한 개표사무 수행인력, 개표소 설비 등을 위한 사업
- (계도홍보) 공명선거 문화정착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해 후보자 및 유권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
- (위법행위 예방단속) 위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홍보·신고제보·조사단속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
- (인터넷선거보도심의 등)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277조
- ② 추진경위 : 국회의원선거 관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202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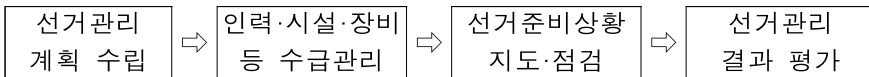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백만원)	226,745	-	30	3,800	280,992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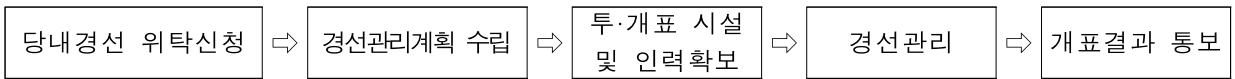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선거관리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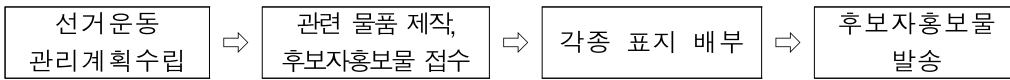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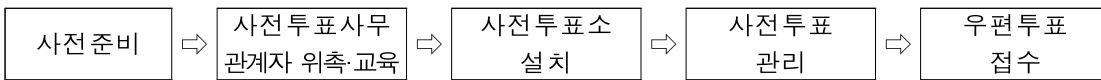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등

(선거운동관리)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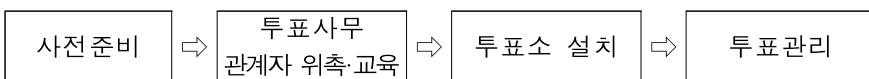
(사전투표관리)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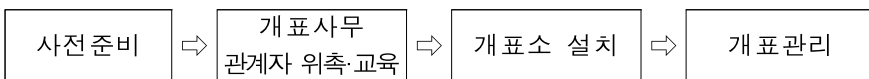
(투개표관리)

- 투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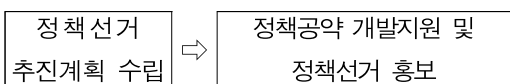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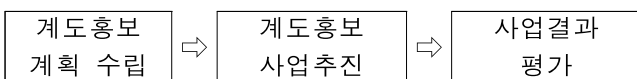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 개표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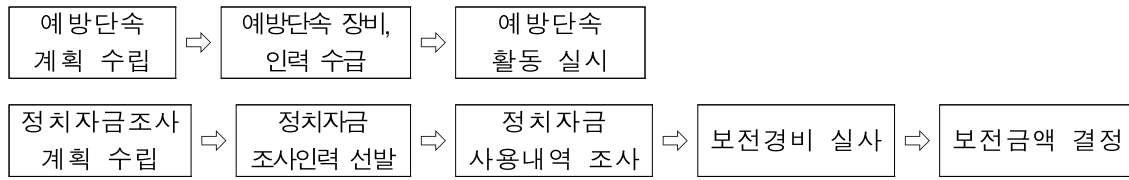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등

(계도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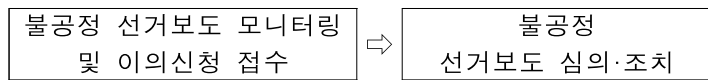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위법행위 예방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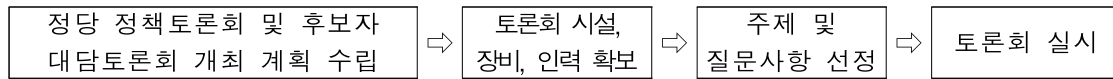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선거범죄 조사사무편람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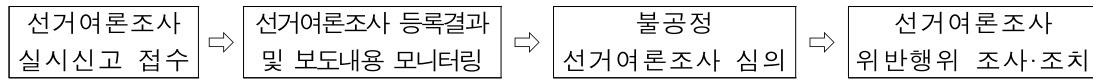
(인터넷선거보도심의 등)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방송토론 사무편람 등



※ 적용 법령 등 : 공직선거법,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선거여론조사 사무편람 등

사 업 명
재보궐선거관리 (1131-303)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선거1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3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재보궐선거관리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증감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B-A)	(B-A)/A
재보궐선거관리	5,349	1,394	1,394	175	163	△1,231	△8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관리일반) 재·보궐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인적, 물적 기반 구축·운영
정당의 후보자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을 지원

2) 사업개요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27조의4, 제277조
- ② 추진경위 : 재보궐사유발생시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른 보조금 배분대상 정당의 당내 경선을 수탁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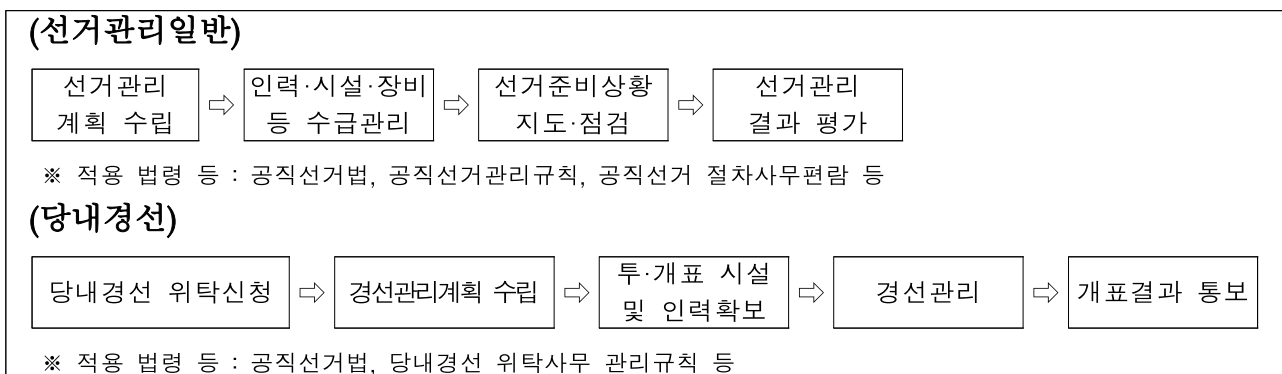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020년~202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백만원)	-	170	2,405	1,394	16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재외선거관리 (1131-30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선거2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5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확정(B)	(B-A)	(B-A)/A
재외선거관리	6,561	7,707	11,205	9,891	2,184	28.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 및 명부작성, 재외투표관리 등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
- (재외선거 제도·홍보) 언론매체, 인쇄물, 시설물,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외선거 홍보
- (재외선거 예방·단속) 재외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 (재외선거 인력운영) 재외선거관 파견에 따른 업무·체재경비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② 추진경위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선거제도 도입('09. 2. 12.)
- 재외선거 실시
 - 국회의원선거 : 제19대(2012), 제20대(2016), 제21대(2020)
 - 대통령 선거 : 제18대(2012), 제19대(2017), 제20대(2022)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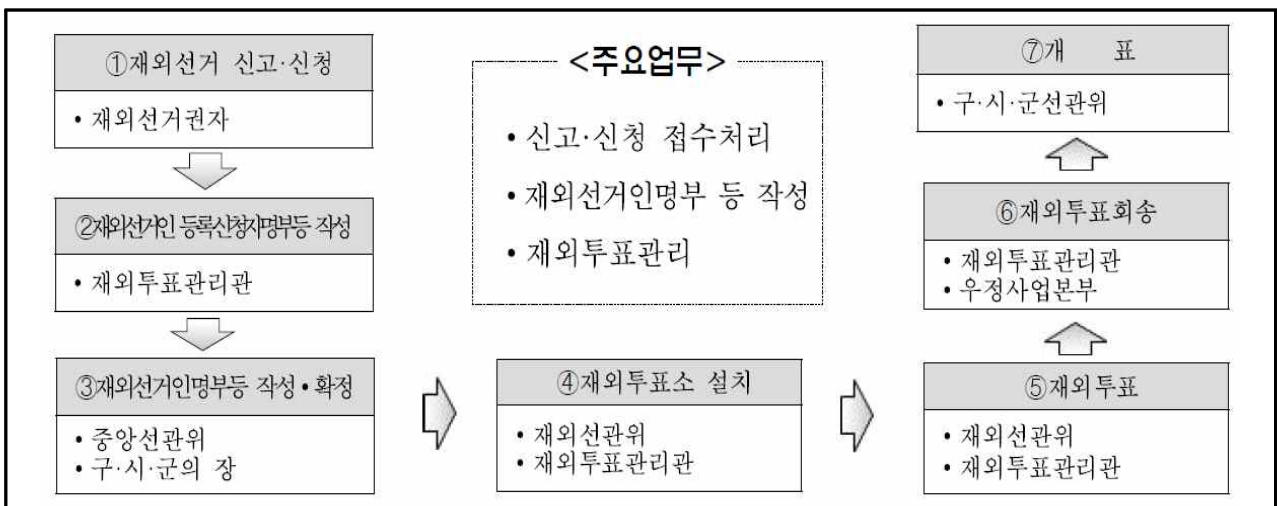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8,428	10,687	7,173	7,707	9,89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재외선거관리위원회 포함)
- 사업 수혜자 : 재외선거권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위탁선거관리 (1131-306)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선거1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6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위탁선거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십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위탁선거관리	199	501	1,685	258	△243	△48.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탁선거관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생활 주변선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조합장선거 등 위탁선거 및 주민(소환)투표 관리
- (위탁선거관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 및 주민(소환)투표의 공정한 관리
- (새마을금고선거관리) 2025. 3. 12.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안정적 준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조(선거관리의 위탁신청) 및 제78조(선거관리경비)
- 주민투표법 제3조(주민투표사무의 관리)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소환투표의 사무관리)

② 추진경위

- ('04. 12.) 농업협동조합법 등 개별조합의 관련법령 개정으로 위탁선거 관리 근거 마련
- ('14. 0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통합하여 위탁선거 관리
- ('15. 03.) 농협(축협 포함), 수협 및 산림조합장선거 동시 실시
- ('17. 07.) 국립대 총장 직선제 전환으로 인한 위탁관리(정부 100대 국정과제)
- ('22. 12.) 시·도 및 구·시·군 지방체육회장선거 동시 실시
- ('25. 03.)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실시 예정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19	179	226	501	258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합, 새마을금고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 |
|--|
| <p>- 위탁선거관리 절차 : (위탁단체) 선거관리 위탁신청 → (위탁단체) 선거인명부 작성 등
→ (관할선관위) 후보자 등록 → (관할선관위) 투·개표 관리</p> |
|--|

사 업 명
선거보전금 (1131-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조사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7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선거보전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선거보전금	89,728	-	118,531	107,224	107,224	순증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보전금) 선거공영제를 실현하기 위해 법정 요건을 갖춘 정당·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비용의 보전비용을 지급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② 추진경위

- 헌법 제116조에 따른 선거공영제를 근거로 2000. 2. 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선거비용보전제도 도입
- ('00. 2. 16.)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선거비용제도 도입
- ('04. 3. 12.)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포상금제도 도입
- ('05. 8. 4.)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등 작성비용에 대한 보전
- ('07. 1. 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약서 작성비용 보전
- ('10. 1. 25.)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에 대한 보전
- ('15. 8. 1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 포함)의 수당과 실비에 대한 보전
- ('20. 12. 29.)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점자형 선거공보 저장매체 작성비용 보전
- ('22. 4. 20.)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액 및 산재보험료 보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1,781	-	126,760	-	107,22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각 정당 및 후보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정당·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등 청구 → 선관위 비용실사 후 보전·부담금액 지급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3(선거비용의 보전 등)

사 업 명
선거장비및물품관리 (1131-30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선거1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9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공직선거관리	선거장비및물품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확정(B)	(B-A)	(B-A)/A
선거장비및물품관리	2,331	36,075	35,756	35,643	△432	△1.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동 사업은 적기에 선거장비 및 선거물품을 안정적으로 수급·활용하기 위한 효율적 보관·관리(유지보수 등)를 주 목적으로 함.
- (선거장비관리) 동 내역사업은 선거장비 제작 및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함.
- (선거물품관리) 동 내역사업은 선거물품의 효율적인 보관·관리를 위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공직선거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 ② 추진경위
 -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후 투표지분류기 등 선거장비 통합 보관 및 유지보수 실시
 -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후 투표함·기표대 등 선거물품 통합보관 실시
 - 2019. 선거장비 등의 유지·보관을 위해 선거장비및물품관리
 - 2021~2022. 14개 시·도 선거물품 집중보관 계약 체결 세부사업 예산 신설
 - 2023~2024. 13개 시·도 선거물품 집중보관 계약 체결
 - 2023~2024. 노후화된 내용연수 경과 선거장비 폐기 및 신규장비 제작 장기계속 계약 체결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선거장비 제작의 경우 2023~2024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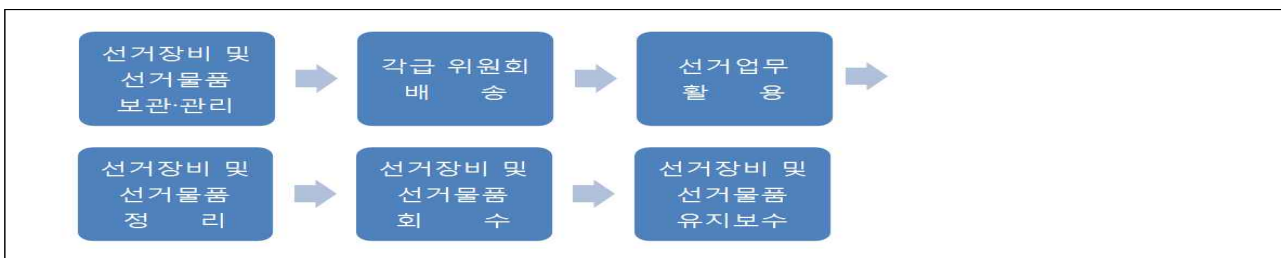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485	4,737	2,485	36,075	35,64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정당사무지원 (1132-32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선거2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0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정당발전지원	정당사무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정당사무지원	240	239	662	80	△159	△66.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당사무지원) 건전한 정당활동 및 정책 정당 기반 조성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정책연구소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세부사업임.
- (정당·후원회 법정사무관리) 정당·후원회 등록 등 빈틈없는 법정사무관리를 위해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회계보고 등 정당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임.
- (정당관계자 외국정치제도연수) 정당 발전을 위해 정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외국정치 제도연수를 지원하는 내역사업임.

-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정당활동 및 정책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내역사업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헌법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제19조(경비의 부담)
-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② 추진경위

< 정당후원회 법정사무지원 >

- 정당·후원회 등록사무처리 및 회계사무 지원, 정당·후원회의 활동상황 공개

< 정당발전세미나 및 연수회 >

- '78년 선진국의 정당, 의회 및 선거관리기관 등 견학 시작
- '05년 시·도당 간부에게도 연수기회 부여
- '07년 연수대상국가를 선진지 위주로 확대 실시

<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 '77년부터 정당발전과 공명선거실천방안 등 협의 실시
- '97년부터 업무협의회 대상을 후원회까지 확대하여 실시
- 2004. 3. 12. 신설된 (구)정당법 제29조의3(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에 따라 설치된 정책연구소의 자생력 강화 및 정책연구 개발기능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9	290	266	239	80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정당, 후원회, 정책연구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정당보조금 (1132-32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선거2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2	322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정당발전지원	정당보조금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확정(B)	(B-A)	(B-A)/A
정당보조금	142,015	47,734	110,074	110,074	62,340	130.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정당보조금) 「정치자금법」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라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정치자금법 제25조(보조금의 계상),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제26조의2(공직후보자 장애인추천보조금),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제27조(보조금의 배분), 제29조(보조금의 감액)

② 추진경위

- ('80. 12. 31.)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상보조금 도입
- ('06. 04. 28.) 여성추천보조금 신설
- ('08. 02. 29.) 선거보조금 신설
- ('10. 01. 25.) 장애인추천보조금 신설
- ('22. 02. 22.)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90,812	46,282	143,239	47,734	110,07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
- 사업 수혜자 : 정당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안)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정당보조금	보조	더불어민주당	110,074	100	정치자금법 제25조 ~ 제27조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3) 사업 집행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국고보조금 지급준비	중앙위원회	국회 및 정당에 의석수 조회 확인
② 보조금 배분·지급	중앙위원회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배분대상 정당별로 배분·지급
③ 보조금 지급 통지·공고	중앙위원회	보조금 지급내역 공고 및 당해 정당에 통지
④ 보조금 지출내역 확인조사	중앙위원회	정당 등의 회계보고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⑤ 보조금 반환 및 국고귀속	중앙위원회	정당해산 또는 등록취소시 보조금 지출내역과 그 잔액을 반환토록 조치(미반환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징수)

사 업 명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1131-33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연수원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0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확정(B)	(B-A)	(B-A)/A
민주시민의식 함양및지원	1,822	2,414	2,414	1,266	△1,148	△4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연수 및 관련 기관·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 (선거·정당관계자 등 과정) 정당 연수를 통한 당원역량 제고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 (유권자 과정 등) 주권의식 및 건전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유권자, 미래유권자 등 연수 실시
- (강사양성 및 콘텐츠 개발 등) 수요자 맞춤형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강사 양성 및 선거 교육 등 콘텐츠 개발

2) 사업개요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및 제14조(선거제도), 제15조의2(선거연수원), 제19조(경비의 부담)
-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및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정치자금법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4조(선거연수원)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교육·연수방침)

② 추진경위

- '00년 정치교육과 신설
- '06년 선거·정당관계자, 유권자, 미래유권자 대상 민주시민정치교육 실시
- '13년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계층 대상 맞춤형 교육 강화
- '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따른 민주주의 선거교실 등 미래유권자연수 확대·강화
- '17년 정부 100대 국정과제(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확대)
- '18년 선거연수원 수원 이전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민주시민교육과정 확대·운영
- '20년 1월 : 만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새내기유권자 연수 강화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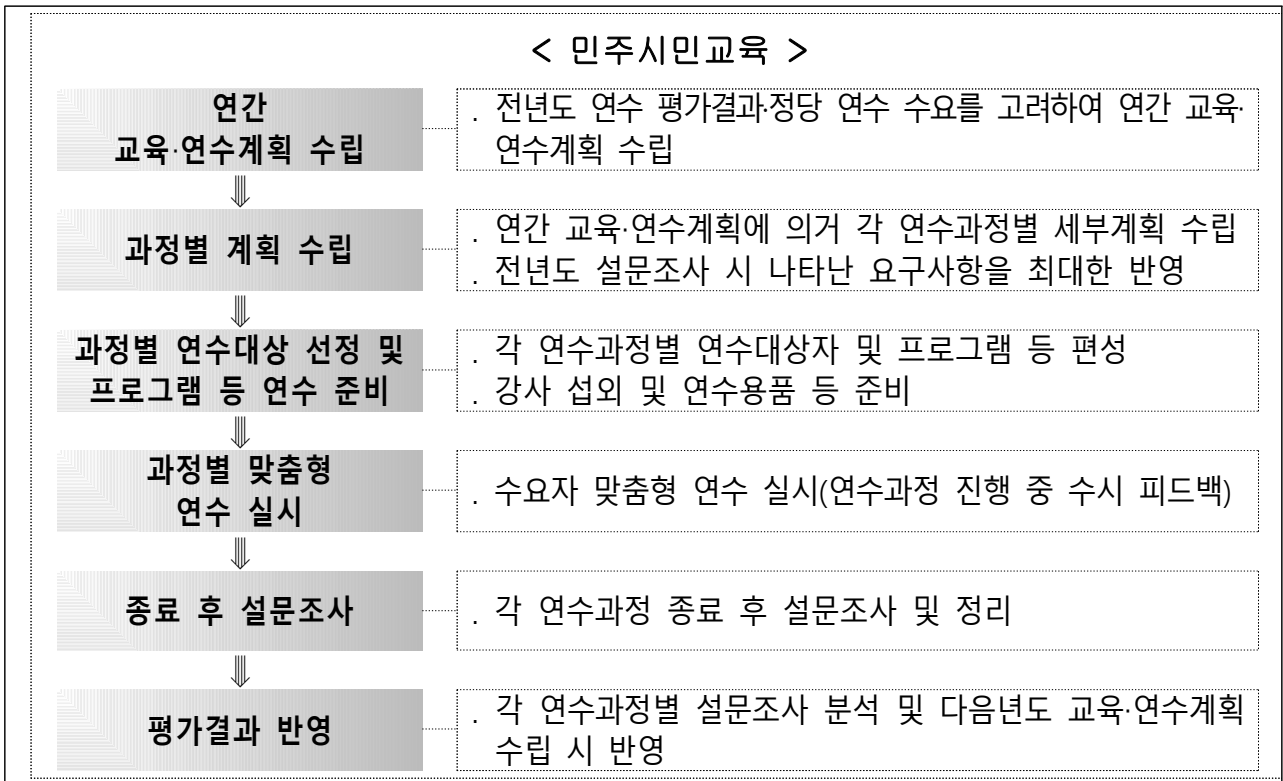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321	3,521	2,900	2,414	1,26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선거연수원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정당·정당관계자, 유권자, 시민단체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사항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133-33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연수원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1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교육및연구기반조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확정(B)	(B-A)	(B-A)/A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404	1,474	3,384	1,369	△105	△7.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교육및연구기반조성) 선거·정당사무 등 법률이 정한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직무교육을 내실화하고, 정치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문제해결력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정치제도 연구하기 위한 것임
- (사이버교육·연수) 동 내역사업은 위원회 직원의 직무역량과 기본소양 강화를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및 상시학습체계 구축·유지 등을 위한 것임

-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동 내역사업은 고도의 전문적인 선거관리 업무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대상의 실무중심 교육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선거·정치제도 연구) 동 내역사업은 위원회의 정책분야 외부 대응능력 강화 및 선거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국내·외 선거·정치제도를 분석 및 연구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인재개발)
- 공무원인재개발법 제8조(인재개발계획의 작성), 제9조(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제10조(공무원의 자기개발 등)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선거연수원) 및 제19조(경비의 부담)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사이버교육·연수) 및 제11조(교수요원의 임무 등)
-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② 추진경위

- ('96. 2.) 선거연수원 설치
- ('06. 6.) 사이버교육시스템 구축·운영
- ('09. 11.)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발행
- ('10. 12.) 전문학술지 『선거연구』 창간호 발행
- ('13. 1.)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신설
- ('14. 8.) 스마트교육 콘텐츠 개발
- ('15. 9.) 대국민 홈페이지 구축 및 홈페이지·사이버교육시스템 통합 개편
- ('16. 8.) 온라인교육포털 구축 및 온라인 공개강좌 시범 콘텐츠 개발
- ('16. 12.) 각국의 정당·정치자금제도 비교연구 발행
- ('17. 11.) 선거연수원 확대·이전
- ('19. 7.) 선거연수원 직무교육부 신설
- ('19. 12.) 정치관계법규 주요 과목 교육콘텐츠 모바일용 변환
- ('20. 7.) 각국의 대통령선거제도 비교연구 발행
- ('20. 12.) 직무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웹표준 동영상 변환·개발

- (‘21. 11.) 전문학술지 『선거연구』 등재학술지 선정
- (‘21. 12.) 사이버교육시스템 고도화 및 사이버교육콘텐츠 개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313	1,357	1,474	1,474	1,369

② 사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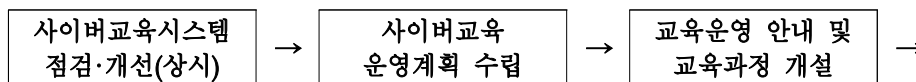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선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선거·정당관계자, 유권자, 소속 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사이버교육·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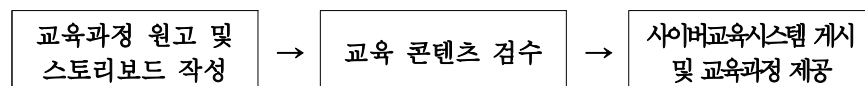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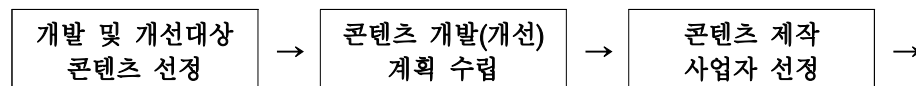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 적용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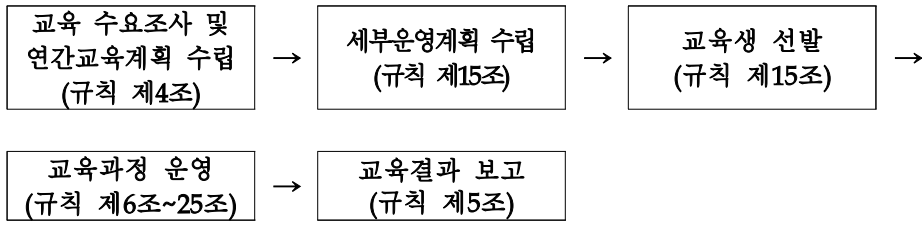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및 개선)

※ 적용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7조,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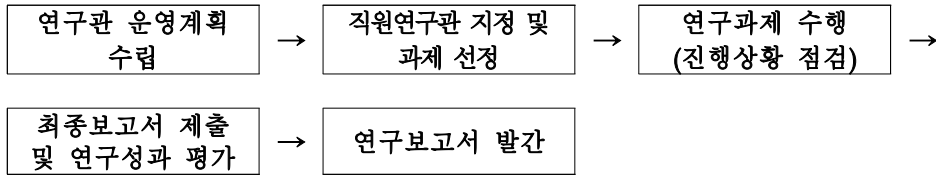
※ 적용 법령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선거연수원 교육연수과정 운영규정



- 선거·정치제도 연구

(연구관 운영 및 보고서 발간)

※ 적용 규정 : 선거연수원 연구업무 관리규정, 「선거연구」 발행에 관한 규정



사 업 명
공명선거기반조성 (1133-33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	선거2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2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공명선거기반조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확정(B)	(B-A)	(B-A)/A
공명선거기반조성	2,741	2,254	3,074	1,354	△900	△39.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명선거기반조성) 아름다운 선거 정착을 위한 상시홍보 활동
-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제도 안내를 통한 깨끗한 선거문화 조성
-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미래유권자를 포함한 전 국민의 주권의식 함양 및 올바른 선거관 확립

-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유권자 주간 홍보를 통하여 국민주권과 참정권의 실현수단인 선거와 투표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한국선거방송) 선거·민주주의 관련 지식기반 콘텐츠 전파로 민주주의의 가치 확산
- (정치후원금 활성화 홍보)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제도)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양양을 위하여 상시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②선거 또는 국민투표가 있을 때에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주관하에 문서·도화·시설물·신문·방송등의 방법으로 투표방법·기권방지 기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상시제도를 위한 사업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5항에 따른 기부행위제한 홍보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기부행위제한의 주체·내용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 정치자금법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의 방법·절차 및 필요성 등을 인쇄물·시설물·광고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② 추진경위 - 사업 시작년도, 추진배경, 부처별 중점과제, 대통령 공약사항 등

- ('97. 공직선거법 개정)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 의무화
- ('02. 1. 1차 직제개편) 신설된 시·도 홍보과 및 구·시·군 홍보계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예산 지원 필요
- ('04. 3. 정치자금법 개정)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로 정치자금 모금액이 급감함에 따라 소액다수의 기부문화 조성 필요성 대두
- ('05. 8. 정치자금법 개정) 정치자금의 기부·기탁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의무 부여
- ('16. 10.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재구축) 기부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 ('20. 1. 공직선거법 개정)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라 선거체험 및 주권의식 함양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상시홍보 필요

- ('21. 1. 정치자금법 개정) 후원회 지정권자 대폭 확대로 정치후원금센터 규모 개편 필요
- ('22. 11.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정치자금법 제6조제2호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관련 규정 개정시 지방의회의원도 상시후원회 운영 가능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916	3,283	2,842	2,254	1,35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조사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3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위법행위예방활동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응자	국고보조율(%)	응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확정(B)	(B-A)	(B-A)/A
위법행위예방활동	10,215	12,002	11,618	10,947	△1,055	△8.7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황과약, 예방·안내활동 및 엄중 조사·조치 등을 통하여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위법행위예방단속)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등 중대선거범죄 근절을 통한 고비용 정치풍토 개선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사이버위법행위 예방·단속) 사이버선거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 유도

- (정치자금조사)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안내 및 위법행위 조사로 정치자금회계 투명성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직선거법」 제10조의2(공정선거지원단)
- 「공직선거법」 제10조의3(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등)
-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 「정치자금법」 제40조(회계보고)
- 「정치자금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
- 「중앙선관위훈령」 제463호(선거안내센터 운영 규정)

② 추진경위

-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 신설로 선관위에 선거범죄 조사권 부여(1997. 11. 4.)
- 정당 및 정당보조금 지출과 관련한 업체까지 조사확대(2002. 3. 7.)
-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지출뿐만 아니라 수입 등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관련 범죄까지 조사 확대(2004. 3. 12.)
-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최고액 확대(5천만 원 → 5억 원)(2006. 3. 2.)
-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상시조사 체제 도입(2006. 5. 31.)
-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상시 운영(2008. 2. 29.)
-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설치·운영(2014. 1. 1.)
- 정치자금조사 사업을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에 통합(2016. 1.)
-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명칭 변경(2018. 4.)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184	14,379	11,463	12,002	10,94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선거인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
 - 공개모집 ⇨ 선발·심사 ⇨ 위촉·운영
- 광역조사팀 운영
 - 시·도별 구성 ⇨ 돈 선거 등 위법행위 정황 파악 ⇨ 중대선거범죄 조사·조치
- 단속직원 (위탁)교육
 - 교육계획 협의 ⇨ 교육계획 수립 ⇨ 교육실시 ⇨ 결과통보
-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 포상금 심사·결정(포상금심사위원회) ⇨ 포상금 지급
- 정치자금조사
 - 위법행위예방활동 ⇨ 회계보고 ⇨ 서면심사 및 현지조사 ⇨ 조치

사 업 명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1133-33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선거2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3	334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한국선거제도 해외전파(ODA)	556	412	1,075	784	372	90.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제선거참관 운영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추구하는 기본정신 및 목표에 부응하여 세계 선거제도 발전과 민주주의 확산 공고화에 기여
- 대한민국 선거·정치 발전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선거관리 기법을 전세계와 공유
- 사업 종료 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성과 등 점검

□ 선거관리역량강화연수

-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동반성장'을 위한 ODA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곳 거버넌스' 구축
- 우리나라의 선거관리 지식·경험 등을 공유, 전파하여 후발 민주국가 선거관리 역량강화
-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확대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 수행 및 한국의 국격 제고 등
- 선거관리 역량 강화 및 선거법제 개선 지원을 위해 전환기 민주국가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 경험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연수과정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기본정신 및 목표), 제4조(기본원칙), 제5조(국가등의 의무)

② 추진경위

- ('06.05.) 외국선거관계자 대상 초청연수 실시(KOICA 공동주관)
- ('12.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ODA예산 편성

- ('13.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 A-WEB 창설 및 사무처 국내 유치

- ('14.01.)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14.06.)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제선거참관 운영

* 임기만료 공직선거 실시되는 해마다 국제선거참관단 초청

(‘16 제20대 국선, ‘17 제19대 대선, ‘18 제7회 지선)

※코로나19로 ‘20 제21대 국선, ‘22 제20대 대선은 사이버 참관 실시

- ('16.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조사업으로 A-WEB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23.0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접사업으로 선거관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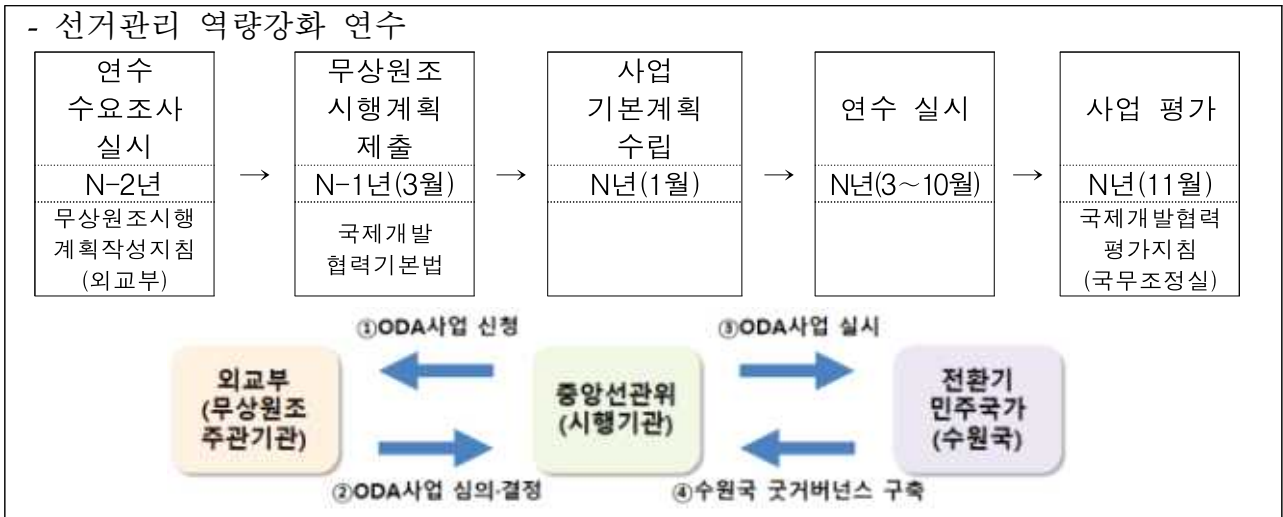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34	444	574	412	78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전환기 민주주의 국가(선거위원회 또는 선거관계자)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인터넷심의기반조성 (1135-31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인터넷선거보도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심의위원회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13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선거관리지원	인터넷심의기반조성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확정(B)	(B-A)	(B-A)/A
인터넷심의기반조성	106	116	247	102	△14	△12.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운영 등) 불공정 선거보도로 피해를 입은 정당 및 후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개최·운영
- (불공정선거보도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심의대상 인터넷언론사 관리 및 모니터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
- (공정선거보도 연수 및 교육) 불공정 인터넷선거보도 사전예방 및 심의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위한 인터넷언론사, 주요 포털사 등 대상 공정선거보도 연수 및 교육사업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선거보도의무),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② 추진경위
 - 2004. 3. 12 「공직선거법」 개정시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제정
 - 2004. 3.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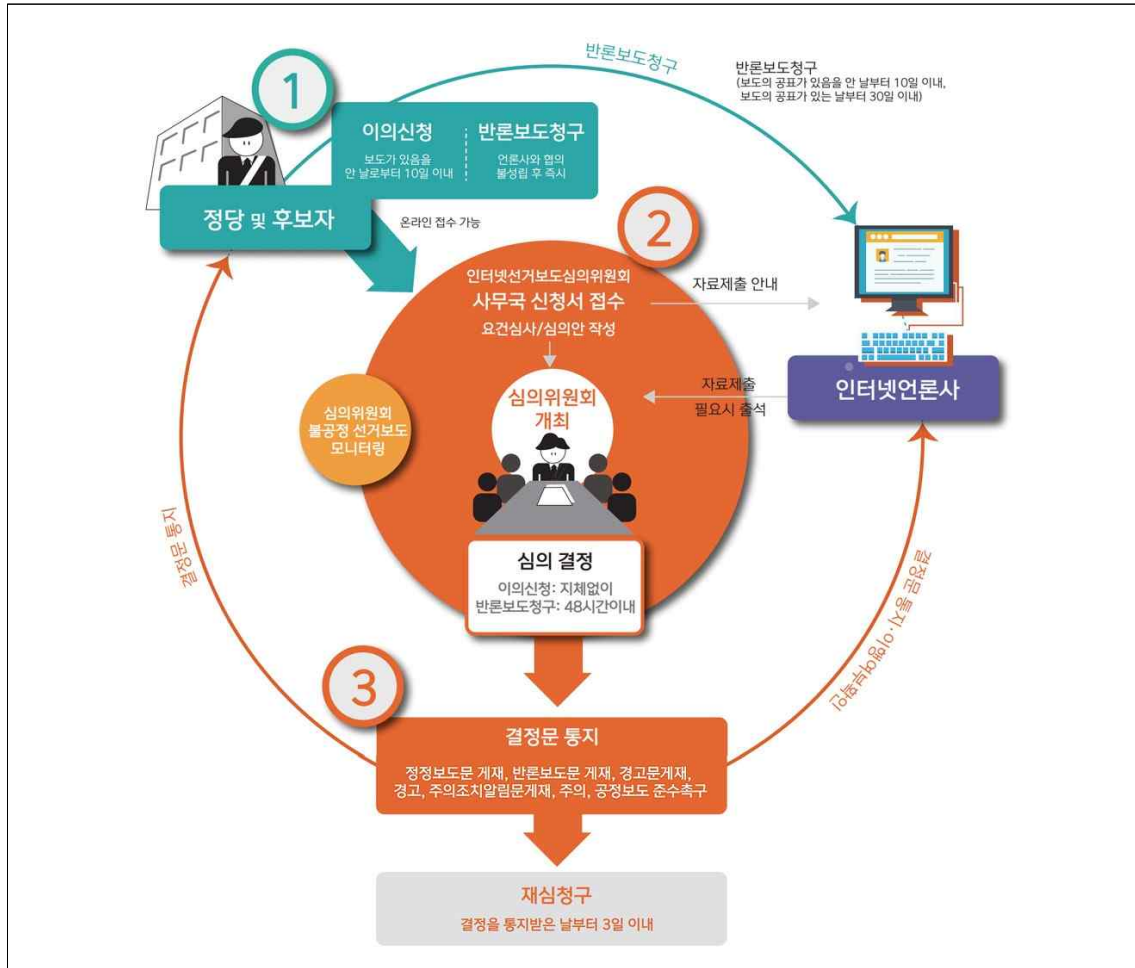
□ 주요내용

-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80	116	116	116	102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정당 및 후보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선거방송토론 (1135-31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중앙선거방송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위	토론위원회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14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선거관리지원	선거방송토론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용자	국고보조율(%)	용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선거방송토론	459	474	930	358	△116	△24.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원회 운영) 동 내역사업은 선거방송토론의 공정한 주관·진행을 위해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대상으로 위원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임
- (토론문화 확산 및 토론제도 연구) 동 내역사업은 토론제도 연구 및 민주시민 토론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고등학생·대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토론대회를 개최·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동 내역사업은 정당의 정견·정책 홍보 기회 제공 및 정당 간의 정책 비교·검증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을 대상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정당법」 제39조(정책토론회)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04. 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 (‘05. 8.) 「정당법」 개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개최 관리
- (‘05. 11.) 제1회 전국대학생토론대회 개최
- (‘14. 3.) 유권자의 날 기념 유권자 토론회 개최
- (‘17. 8.) 고등학생토론회를 전국 규모로 확대하여 전국고등학생토론대회 개최
- (‘18. 9.) 2018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대학생 및 고등학생 통합) 개최
- (‘21. 11.) 2021 대한민국 열린토론대회 온라인 개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533	489	474	474	358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7) 사업 집행절차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정당정책토론회	
추진절차	절차내용	추진절차	절차내용
① 기본계획 수립	토론대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① 기본계획 수립	정당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	
② 토론주제 공모선정	토론주제 외부 공모 및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선정	② 개최일·장소 등 결정	정당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결정
↓		↓	
③ 참가팀 접수선발	고등학생부 및 대학생부 접수	③ 초청정당 선정	「정당법」제39조에 의한 초청 정당 선정
↓		↓	
④ 예선·본선 개최	예선·본선 개최	④ 토론주제 수집	정당 및 기관·단체 등을 통한 토론주제 수집
↓		↓	
⑤ 결승전 개최	결승전 개최	⑤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		↓	
⑥ 결과보고	대회 결과보고 및 평가	⑥ 사회자 선정	사회자 선정
		↓	
		⑦ 질문사항 선정	질문사항 선정
		↓	
		⑧ 설명회 개최	참석자 발언 순서 등을 정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
		↓	
		⑨ 토론회 진행	정당정책토론회 진행
		↓	
		⑩ 결과보고	정당정책토론회 결과보고 및 평가

사 업 명
선거여론조사심의 (1135-31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중앙선거여론조사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심의위원회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5	315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선거관리지원	선거여론조사심의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확정(B)	(B-A)	(B-A)/A
선거여론조사심의	249	300	394	293	△7	△2.3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

- 동 내역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상시 분석·모니터팀 운영을 통해 중앙 등록관리시스템 및 언론매체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보도내용의 상시 모니터링과 심의·원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선거여론조사 사전 차단 및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임.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운영)

- 동 내역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소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를

운영하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등록관리시스템)를 유지·관리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법정사무를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 (선거여론조사심의 강화)

- 동 내역사업은 선거여론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인력 육성 및 불법선거 여론조사 조사·조치를 하고 정당·언론사·선거여론조사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선거여론조사 심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8조의8(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제8조의9(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08조의2(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
- ② 추진경위
 - ('14. 3.)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출범
 - ('15. 12.) 선거여론조사 신고·등록 상시화, 선거여론조사의 적용범위 확대 ('정당 지지도·당선인 예상' → '선거에 관한 모든 여론조사')
 - ('17. 2.)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도,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응답자 인센티브 제공, 불법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조사권 및 고발·과태료 부과권 등 새로운 업무 대폭 추가
 - ('19. 7.)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평가 가능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접촉률 도입, 응답자 특성표 및 가중값 배율 등 강화
 - ('21. 12.)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현실적 개정을 통한 선거여론조사 객관성·신뢰성 제고(응답률 제고 노력 의무 규정, 권고 무선 응답비율 규정 등을 신설·변경)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백만원)	270	270	300	300	29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선거권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인건비 (7101-150)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기획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01	15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인건비	인건비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인건비) 소속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지급

2) 사업개요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09,038	217,302	216,405	216,626	221,57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 선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3)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1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11	25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본경비	위원회기본경비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위원회기본경비	14,446	16,298	16,787	15,383	△915	△5.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원회기본경비) 관서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의 집행으로 행정의 안정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4,826	15,230	15,837	16,298	15,383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해당없음

사 업 명
법제지원및법규운용 (7132-31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법제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1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법제지원및법규운용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법제지원및법규운용	420	497	664	442	△55	△11.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정치관계법제지원 및 행정쟁송) 국회 입법지원, 정치관계법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한 선거·정치관계법제의 합리적 개선, 국가·선거·행정소송, 인사소청 및 행정심판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비·대응으로 선거행정의 신뢰성·안전성 확보
- (선거·정치관계법규 운용) 통일적이고 신속·정확한 법규안내를 위하여 공직선거·투표·정당 및 정치자금법 등 관계법규의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및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맞춤형 선거안내서비스 제공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법령에 관한 의견표시 등) 및 제19조(경비의 부담)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2조(법제국)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1조(법제국)
- 「공직선거법」 제219조(선거소청),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17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
-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선거관리위원회 법제업무운영규정」
-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 운영 규정」

② 추진경위

- 위원회 창설부터 소관 법률 제·개정 등에 관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수시 제출
- 선거·국가·행정소송 수행 및 고문변호사 자문 의뢰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송지원심의위원회 운영
- '06년 전화·방문 및 인터넷 질의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대국민 법규안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합안내센터 설치
- '06년 10월 국회의원 등 대상 정치관계법 안내 등을 위한 의정지원과 설치
- '09년 7월부터 법규안내 T/F팀, '10년 1월부터 법규안내센터로 개편
- '13년 법규안내센터와 법규해석과를 해석과로 통합·운영
- '18년 선거안내센터 설치
- 정치관계법 법규운용자료('08, '12, '14, '16, '17, '19, '22)·공직선거법 해설서('14, '16, '20)·지방자치단체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18, '22) 등 작성·발간
- 「시·도 법규운용 담당자 워크숍」 개최('15~'18) 및 「법규 운용능력 경시대회」 개최('13~'14, '17~'22)
- '23년 의정지원과와 선거안내센터를 의정지원선거안내센터로 통합·운영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04	392	451	497	4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 관계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① 선거·정치관계법제 지원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준비	법제과	선거·정치관계법규 개선방안 마련
↓		
② 의견 수렴	법제과	정당,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언론 및 관련 부처 등 의견 반영
↓		
③ 의견 제출	법제과	선거·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국회제출(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
↓		
④ 입법 지원	법제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등 입법지원 활동(국회법 제44조)

② 행정쟁송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선거소송 제기	-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등 제기
↓		
② 소송 등 수행	위원회	변호사 선임 및 답변서 작성 등 사무추진
↓		
③ 피드백	위원회	선거소청 및 선거소송 제반사항 관리

③ 선거·정치관계법규 운용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질의접수 ↓	위원회	전화, 인터넷, 서면 등 정치관계법 질의 접수
② 질의검토 ↓	위원회	법령, 운영기준, 선례 등에 따라 질의 처리
③ 질의회신 ↓	위원회	질의자에게 질의 회신
④ 공유 및 안내	위원회	위원회, 정당, 단체 등 질의회답 공유 및 안내

사 업 명
선거관리역량강화 (7132-340)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기획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1131	301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선거관리역량강화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조직역량 강화) 역량강화를 통한 직무수행능력 향상
- (직원 상시학습)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상시학습 실시
- (사무능률 제고) 제안제도 운영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 향상

2) 사업개요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조직역량 강화 : 자체 시행계획
- 직원 상시학습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 사무능률 제고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제안제도 운영규정 등

② 추진경위

- ('83) 연구분임 운영 시작, 시·도위원회 책임하에 권역분임 자율적 구성·운영
- ('09) 상시학습 운영지침 제정·시행
- ('13) '제안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제안제도 활성화 및 효율적 데이터 관리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해당없음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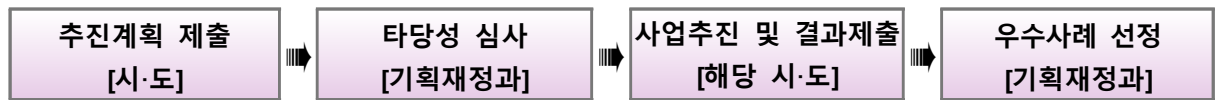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900	890	845	803	64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수혜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전문성강화 특화사업



□ 제안사무 관리 업무흐름도



사 업 명
시험관리및전문성장화 (7132-34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인사과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11	7132	343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시험관리및전문성장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시험관리및전문성장화	443	539	844	412	△127	△23.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시험관리및전문성장화) 선거관리 및 법규운용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원 대상으로 능력검정, 역량평가 등을 실시하고, 공개경쟁·경력채용을 통한 선거관리 인력을 적기 확보하여 원활한 선거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 (능력검정시험 및 승진시험 등 관리) 5급 승진을 위한 능력검정시험, 심사승진 등 실시
- (역량평가 전문교육 및 채용 관리) 5급 승진을 위한 역량평가 전문교육,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통한 적기 인력 충원 및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제은행 보완비용 부담 등

- (법규운용담당 전문교육 관리) 시·도 및 구·시·군 법규운용담당자 실무연수 실시 등을 통한 법규운용의 전문성 제고
- (인사시스템 유지보수) 인사시스템 유지보수로 인사·보수·복무 등 인사행정 전반의 효율적 업무처리 및 체계적인 정보관리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28조(신규채용), 제34조(시험 실시기관)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21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33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3조의2(능력검정시험의 실시 등), 제33조의3(역량평가 운영), 제3장(시험)

② 추진경위

- '09년부터 6급 행정직 공무원의 5급 심사승진을 위한 능력검정시험과 공개경쟁 심사승진제도 실시, '16년 제한경쟁심사승진제도 도입 및 '24년 업무실적심사 승진제도 도입
- '13년부터 실시한 5급 역량평가 심사승진을 '24년부터 역량평가 교육 이수제로 변경
- 인터넷선거보도, 사이버선거범죄대응 등의 전문분야 강화를 위해 전문임기제 공무원 등 경력경쟁채용 실시
- '11년부터 법규운용의 통일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 법규운용 담당자 대상 법규운용능력 함양교육 실시
- '15년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인사혁신처 7·9급 공채시험 문제은행 보완·선정비용 부담(인사혁신처 요청)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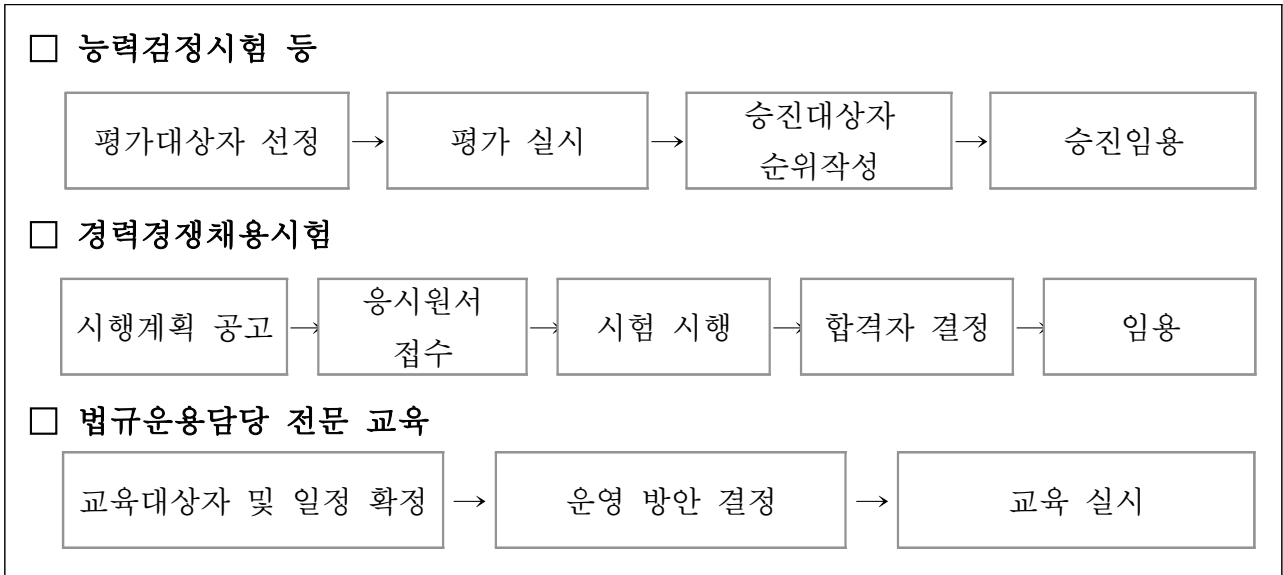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406	506	539	539	41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 없음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7132-34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기획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4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선거정보 및 기록물관리	2,112	2,311	7,455	1,442	△869	△37.6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기록물관리) 기록물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수집·관리·보존·활용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투명성을 제고
-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편찬) 도서를 효과적으로 수집·정리·보관하고 도서관 서비스와 Web-DB를 통해 선거·학술자료를 제공하며, 선거 및 정당자료의 수집·사서편찬·전시 운영 등을 통해 선거역사를 기록·보존·전파
- (선거기록관 건립) 선거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영구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 참여·소통형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 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② 제1항에 따라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운영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및 기록물관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3.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4.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협조에 의한 기록물의 상호활용 및 보존의 분담 5.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훈련 6. 다른 기록물관리기관과의 연계·협조 7. 그 밖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①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선거관리위원회 정보공개규칙」
- 「도서관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 규정」, 「선거·정당 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 「선거사·정당사 및 선거관리위원회사 편찬위원회 규정」

② 추진경위

○ (기록물관리)

-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2005. 11.)
- 주요기록물 및 선거행정박물 등 DB구축(2006 ~ 2022)
- 탈산장비 및 비전자기록물 RFID시스템 도입(2020)
- 기록물관리요원 양성 및 교육(2006 ~ 20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 보존서고 설치(2005, 2010) 및 이전·확대(2019)

○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편찬)

- 선거도서관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2007. 1. ~)
- 도서관리시스템 도입(2009) 및 Web-DB 및 전자책 서비스 개시(2013. 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운영규정 제정(2019)
- 선거도서관 개관 및 RFID도서관리시스템 도입(2020. 5.)
- 도서관법 적용 대상 시설 인정(2023)

- 국회도서관 (2022. 8.)·헌법재판소도서관(2023. 5.) 업무협약(MOU) 체결
- 「선거·정당 관련 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규정」 제정(2007. 11.)
- 「선거·정당 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2021. 2.)
- 선거·정당 행정박물자료 공개 구입(2021 ~ 2022)
- 대한민국 선거사(1~8집)·정당사(1~7집) 발간(1973 ~ 2022)

○ (선거기록관 건립)

- 건축 부지 확보(2019)
- 선거기록관 신축 기본계획 수립(2020. 2.)
- 선거기록관 건립·운영방안 연구용역 실시(2020. 3 ~ 2021. 11.)
- 선거기록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22. 10)
- 디지털 선거기록관 서비스포털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023. 3 ~)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3,492백만원

사업명/연도	2024	2025(안)	2026(안)
선거기록관 영구기록관리시스템 구축	349	1,934	1,209

- 사업기간 : 3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194	1,966	2,166	2,311	1,442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기록물 관리(기록물 DB 구축)

기록물 반출 → 기록물 해철 → 기록물 보수 → 기록물 분류 → 면표시 → 기록물 정리검증 → 기록물철 색인입력 → 디지털작업(스캐닝, 인코딩) → 기록물건 색인입력 → 색인검증 → 기록물 재편집 및 제본 → 시스템 업로딩 및 서가 배치

-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편찬(선거·정당자료 구매·복제)

공모 및 접수 → 자료구입위원회 개최(선정·평가·심의) → 구입 예정자료 화상공개 → 계약 및 인수

-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편찬(도서 편찬)

편찬위원회 및 실무단 구성 → 원고 집필 → 교열·감수 → 발간·배부

- 선거기록관 건립

- 개관 준비 : 건축 기본·실시 설계 → 착공 → 준공 → 내부설비(시설·장비) → 개관

※ 조직 구성·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추진

- 운영시스템 개발 :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 시스템 개발·구축(1·2·3차)

- 주요핵심사업 추진 : 보존기록물 정리·기술, 검색도구 제작 및 콘텐츠 개발 등

사 업 명
국제교류협력(7132-345)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선거2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5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국제교류협력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100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국제교류협력	1,082	1,045	1,597	1,130	85	8.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서울국제선거포럼) 위원회 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한민국의 우수한 선거제도 및 관리 기법 공유를 위해 각국 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세미나 연례 주최
- (국제 교류) 선거 관련 국제적 논의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회의 참석·발제 지원 및 외국과의 선거외교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 (A-WEB 운영지원) 중앙선거위가 주도하여 창설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안정적 정착 및 활동·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건비·운영비 등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3조(선거2국) 제2항

② 선거2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국제교류·협력업무 총괄·조정 에 관한 사항
23.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4. 국제회의 등 국제화업무에 관한 사항
25.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6.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27. 정치·선거제도 해외전파에 관한 사항
28. 외국 선거참관에 관한 사항
29.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시행규정 제11조(선거2국) 제4항

④ 재외선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국제교류·협력업무 총괄·조정 에 관한 사항
20. 외국 선거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21.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2. 선거참관 등 외국 선거지원에 관한 사항
23. 국제교류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4. 외빈, 외국 선거관계자 등 초청 및 영접에 관한 사항
25. 국제회의에 관한 사항
26. 후발 민주국가 정치관계법제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27. 선거전문가 파견 지원에 관한 사항
28. 선거관리위원회 영문자료 감수에 관한 사항
29. 영문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협의회와의 협력) 제1·2·3항

① 대한민국과 협의회와의 협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시책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A-WEB 현장 제24조(사무처 운영비)

사무처가 소재한 국가의 선거관리기관은 사무처의 건물 임차 및 관리, 사무처의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② 추진경위

- 외국 선거참관 정례화('07. 01.)
- 국제교류전문인력 선발·양성('08. 01.)
- A-WEB 창설 및 대한민국 사무처 유치('13. 10.)
- A-WEB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4. 01.)
- 연례 외국 선거관계자 초청 세미나(서울국제선거포럼) 개최 시작('15. 05.)
- A-WEB 운영지원비 국제교류협력 예산에서 지원('14 ~ '15)
- A-WEB 운영지원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1133-334)사업으로 이관('16. 01.)
- A-WEB 운영지원비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1133-334)사업에서 국제교류협력(7132-345)으로 이관('20. 01.)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백만원)	1,136	1,187	1,108	1,045	1,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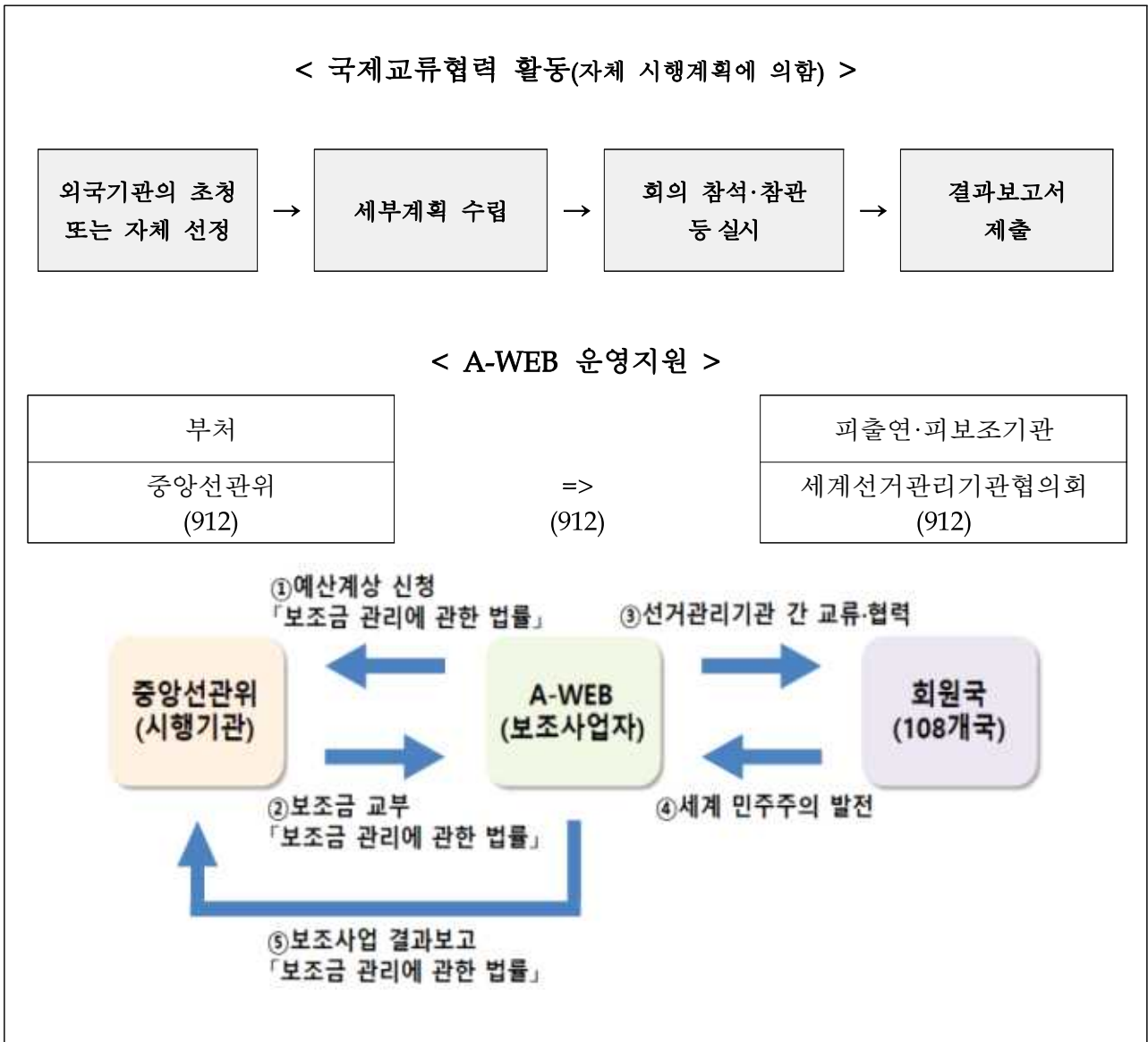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
- 사업 수혜자 : 외국 선거기관 관계자 및 A-WEB 회원국가 국민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 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예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A-WEB 운영지원	보조	세계선거 기관협의회 (A-WEB)	912	100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7132-34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감사관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100	7132	347
명칭	선거의공정한관리	기관운영지원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정부안(B)		
감사활동및 공직윤리확립	139	180	446	164	△16	△8.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감사활동) 동 내역사업은 업무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부당한 관행·조직문화를 개선하며,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위원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감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임.
- (공직윤리확립) 동 내역사업은 공직자 재산 및 병역사항 신고·공개로 청렴공직 이미지를 조성하고,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5조(정기감사)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6조(특정감사)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7조(기강감사)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8조(일상감사)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1조의2(감사요원 교육)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16조(감사의 대행)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3조(감사우수공무원 등의 선정)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 제34조(직무감찰)
- 공직자윤리법 제9조(공직자윤리위원회)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 청원법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 청원법 제8조(청원심의회)
- 청원법 제11조(청원서의 제출)
- 청원법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 청원법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행동강령

② 추진경위

- 선거관리위원회 감사규정에 따라 각급위원회 감사 및 직무감찰 실시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4급 이상 공직자 재산·병역신고 심사
- 각종 비위행위의 예방 및 조사활동
- 청원심의회 운영
 - 2020년 청원법 전면개정으로 청원심의 강화 및 온라인청원시스템 등 공개청원이 도입되어 이를 반영한 2022. 12. 23. 중앙선관위 규칙 제정·시행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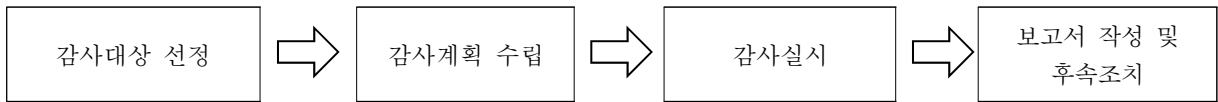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안)
사업비	190	180	180	180	164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시·도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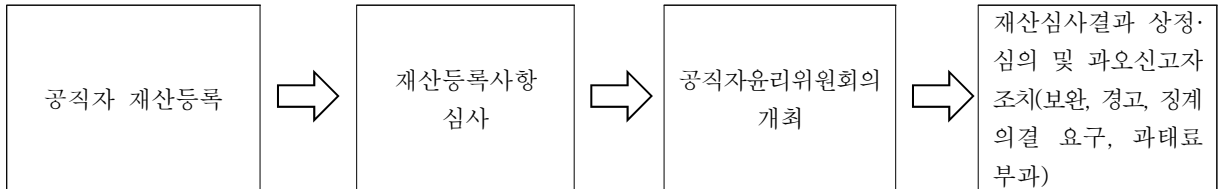
① 감사활동 내역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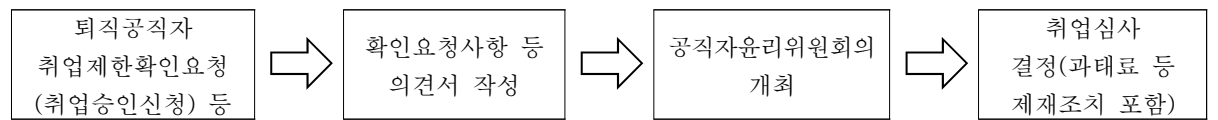
- 감사대상 선정 : 최근 정기감사 미수감 위원회를 대상으로 선정
- 감사계획 수립 : 감사 시기, 감사반원 등 결정
- 감사 실시 : 계획에 근거하여 감사 실시
- 보고서 작성 및 후속조치 : 감사 결과에 따라 보고서 작성, 감사우수공무원 선정·시상, 물의사례 처분

② 공직윤리확립 내역사업

- 재산등록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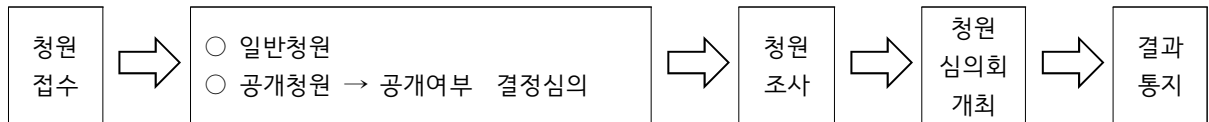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
- 구성 : 총 13명으로 구성(위촉위원 9명, 임명위원 4명), 임기 3년으로 연임 가능하나, 임명위원의 경우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
- 운영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퇴직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확인·업무취급 승인 등 사안 발생시마다 수시로 개최

③ 청원심의회 운영 내역사업(신규)



- 근거 : 「청원법」 제8조
- 구성 : 중앙 7인, 17개 시·도 5인으로 구성
- 운영 : 청원법 전면개정 및 2022. 12. 23. 규칙 제정으로 청원심의 강화 및 온라인청원 시스템 등 공개청원(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 도입·운영

사 업 명
차량및물품관리 (7132-349)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기획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49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차량및물품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소관부처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차량및 물품관리		기획조정실	김동현	서기관 강중원	김성민
		기획국			
		총무과	02-3294-0820	02-3294-0822	02-3294-0823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2024년 예산		증감 (B-A)	(B-A)/A
		본예산(A)	추경	요구안	확정(B)		
차량및물품관리	1,438	1,545	1,545	1,565	987	△558	△36.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노후한 행정장비(차량)의 적기교체로 선거지원 업무능률 제고
- 내용연수가 경과한 냉·난방기, 복사기 등 보급 및 교체로 근무환경 개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5조(차량의 교체)
- 물품관리법 제16조(물품의 정수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물품의 정수관리)
- 조달청 고시 제2021-38호(정수관리 대상물품) 및 제2021-41호(내용연수)
- 민방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7조의2제1항제7호
-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

② 추진경위

- ('73.~) 기관운영 및 행정업무에 필요한 관용차량 및 정수물품 구입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백만원)	1,520	1,500	1,500	1,545	987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

3) 사업 집행절차 : 공용차량, 정수물품 등 교체시기 도래 시 물품 구입

사 업 명
전산운영경비(정보화) (7132-35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자료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2,699	13,957	16,874	19,500	5,543	39.7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전산운영경비) 정보시스템의 안정화·연속성 확보로 효율적인 선거행정 업무환경 조성, 선거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호기반 강화로 대국민 신뢰 제고
-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원활한 행정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행정전산장비 도입
- (정보통신망 운영 개선) 선거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선관위 통신망 회선비
- (정보기반보호 강화) 사이버 위협 대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선거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조(지능정보화사회 기본원칙) 및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전자정부법 제3조(행정기관 등 및 공무원 등의 책무)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및 제14조(복구조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② 추진경위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05년 : 선거정보통신시스템, ’12년 : 재외선거관리시스템, ’22년 온라인투표시스템)
- ’12년 위원회 자체통신망(선거정보통신망) 구축
- ’13년 재해복구시스템(통합명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 ’16년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구축
- ’18년 사전투표 유·무선통신장비 국가표준(KS) 제정 고시
- ’20년 선거정보센터 이전(서울시 관악구 → 과천시)
- ’21년 재해복구센터 구축(대전시 서구)
- ’22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ISO27001/27701) 인증 유지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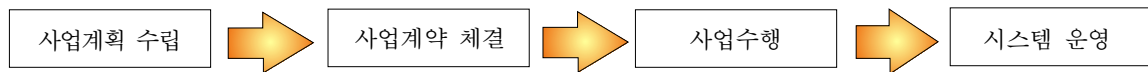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0,432	10,746	12,828	13,957	19,500

- 기타 :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및 소속 직원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정보화 사업 수행(정보화 업무지침)

- 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② 사업계약 체결 : 계약의뢰 및 사업공고, 제안서 기술평가, 계약체결
- ③ 사업 수행 : 시스템 등 구축, 감리
- ④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실시

사 업 명
위원회운영 (7132-35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의사담당관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1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위원회운영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위원회운영	1,721	2,257	2,340	1,761	△496	△22.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위원회운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

* 중앙, 17개 시·도, 251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별 운영

2) 사업개요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 제4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12조(위원의 대우)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4조(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 제5조(안전검토수당)

② 추진경위

- 1963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정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창설
- 201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관한 규칙」 제정
- 조직운영에 따른 기본사업 추진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99	1,849	1,849	2,257	1,76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위원회의 개최,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사 업 명
선거연수원운영 (7132-352)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연수원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2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선거연수원운영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선거연수원운영	1,944	2,106	2,129	2,001	△105	△5.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연수원운영) 선거·정당사무에 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설치한 선거연수원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청사 유지·관리) 동 내역사업은 선거연수원의 교육·연수 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청사관리 인력(시설관리·환경미화·식당보조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관리 비품의 확충·보완을 위한 것임
- (교육환경 개선) 등 내역사업은 선거연수원에서의 교육·연수의 효과 및 교육·연수생들의 만족도와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한 교육 기자재 등을 구입·교체하기 위한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정부청사 관리규정 제3조(청사의 수급 및 관리)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의2(선거연수원)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16조(선거연수원)
-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5조(편의시설)
- 선거관리위원회청사 수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② 추진경위

- ('68. 10.) 준공(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청사로 사용)
- ('96. 05.) 선거연수원 개원(종로)
- ('12. 12.) 수원청사 재산 유상관리전환
- ('17. 11.) 수원청사 개원
- ('17~'18)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및 집기 등 설비
- ('19~'23) 청사단지 정비, 노후시설 개선 및 교육공간 조성 등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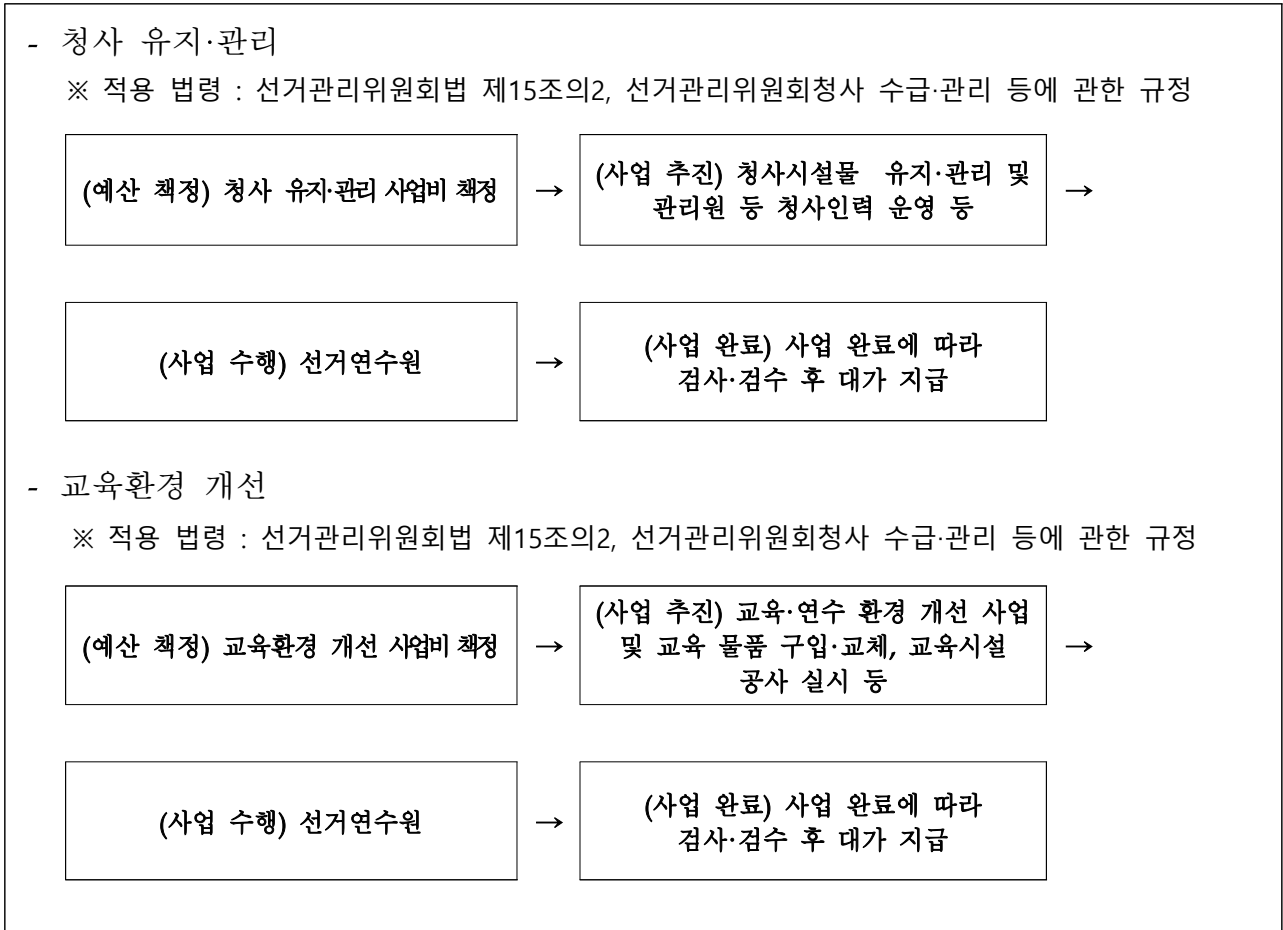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719	1,923	2,076	2,106	2,001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선거연수원
- 사업 수혜자 : 유권자, 소속 직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청사관리 (7132-35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기획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2	354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기관운영지원	청사관리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청사관리	21,424	24,539	26,738	23,959	△580	△2.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청사시설보수) : 노후청사 시설개선을 통한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 (청사유지관리) : 각급위원회 청사의 안정적 유지관리
- (청사관리인건비) : 공무원 봉급, 피복비, 급식비 및 법정 보험료 운영 등
- (사회복무요원관리) :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비, 급식비 및 교통비 등의 운영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급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병역법 제31조, 제75조의3
-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53조

② 추진경위

- (1963년) 선관위 창설

- 각급위원회 청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로 적정한 선거업무 환경 조성
- 각급위원회 청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반 마련
- 사회복지무요원 봉급, 급량비, 여비 등 필수경비 지원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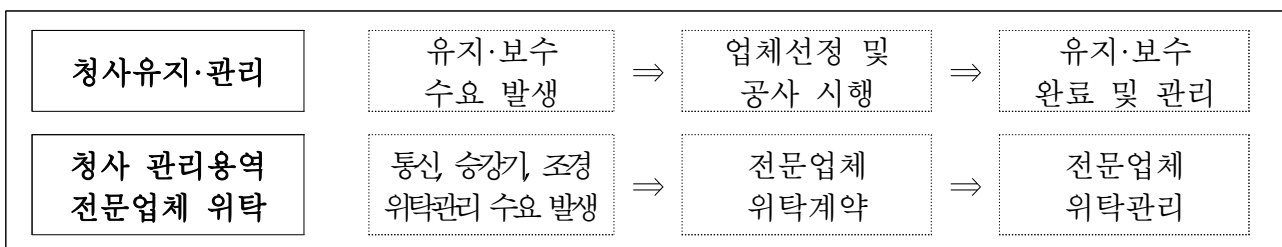
- 총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21,922	21,220	22,331	24,539	23,959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민원인, 공무원 등

3) 사업 집행절차



사 업 명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7136-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선거정책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거위	선거1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6	50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선거행정정보화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위탁선거관리	482	568	1,477	563	△5	△0.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온라인투표기반조성) 공직선거, 주민투표 등 온라인투표 단계적 도입 기반 조성
-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 조성) 대국민 안내홍보 및 담당자 교육훈련을 통한 온라인 투표 운영 기반 조성
- (온라인투표시스템 관리)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 지원 및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9조(전자투표 및 개표)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규칙
- 주민투표법 제1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개표)
- 주민투표 관리규칙 제11조(「공직선거관리규칙」의 준용)
-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22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 정당사무관리규칙 제24조의15(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

② 추진경위

- (‘04. 07.) 전자투표 및 전자선거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 (‘13. 10.) KT와의 협약을 통한 온라인투표서비스 제공
- (‘18. 01.) 온라인투표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 (‘18. 12.) 공공영역 대상 서비스 제공목적 온라인투표시스템 자체구축
- (‘19. 10.) 자체구축 온라인투표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오픈
- (‘20. 05.)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ISP 수립(‘21년부터 5개년간 추진)
- (‘21~‘22)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추진(과기부 지원)
- (‘22. 11.) 블록체인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한 온라인투표서비스 개시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697	531	531	568	563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당, 초·중·고등학교 등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온라인투표 이용절차 : (이용기관)서비스 이용신청→(관할선관위)협약체결 및 이용승인
→(이용기관)투·개표 관리

사 업 명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7136-52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정보자료국		일반공공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6		523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선거행정정보화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B-A)	(B-A)/A
			요구안	확정(B)		
선거정보시스템구축	6,778	6,273	7,678	6,273	-	-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선거정보시스템구축)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와 대국민 선거정보서비스 제공
-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동 내역사업은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관리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분야별 전문 기술인력을 통하여 선거정보시스템을 안정적·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것임.
-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동 내역사업은 최적의 행정업무 환경 조성과 장애 사전예방 등을 위해 최신 기술 표준 적용 및 문서 생산·공유 기능 강화 등 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임.
- (사전투표통신망 운영) 동 내역사업은 사전투표소 통신망 구축·운영을 통해 사전 투표의 안정성·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임.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동 내역사업은 대국민 알권리 보장 및 공익 활용성 증대를 위해 공공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공직선거법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 공직선거법 제14장의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공직선거법 제274조(선거에 관한 신고 등)
- 전자정부법 제1조(목적)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10조(공공데이터 관리 시스템 운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② 추진경위

- 2007년 : 선거관리위원회 정보화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ISP) 수립
- 2008년 : 위원회 정보화 통합을 위한 선거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 2009년 : 재외선거인 선거권부여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2. 12.)
- 2009년 : 재외선거 및 통합명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12. 24.)
- 2012년 : 통합명부를 활용한 사전투표 도입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2. 29.)
- 2014년 : 전국단위 최초 사전투표의 완벽한 관리(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015년 : 재외선거 인터넷 신고·신청 허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8. 13.)
- 2015년 : 영구명부제 및 사전투표 전용통신망 구축에 대한 공직선거법 개정(12. 24.)
- 2016년 : 제도개선 반영 및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선거정보시스템 고도화
- 2017년 : 제19대 대통령 궐위선거 관리
- 2018년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및 재·보선 확정상황 공개
- 2019년 : 선거관리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규칙 제정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 마련
- 2020년 : 위원회 개방포털시스템(LOD 서비스 포함) 구축·운영
- 2021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설치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단년도(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5,603	6,144	6,902	6,273	6,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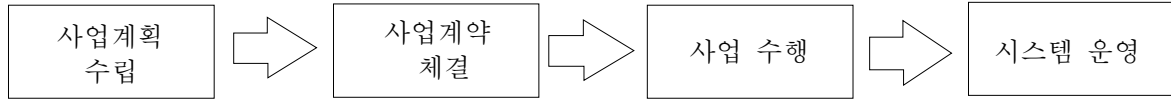
- 기타: 해당없음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업 수혜자 : 해당없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정보화 사업 수행



- ①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 ② 사업계약 체결 : 입찰공고, 제안서 기술평가, 계약체결
- ③ 사업 수행 : 시스템 등 구축, 감리, 검수
- ④ 시스템 운영 : 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실시

사 업 명
예비금 (7137-430)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06	기획조정실	00	010	011
명칭	일반회계	중앙선관위	기획국		일반지방행정	입법및선거관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7100	7137	430
명칭	선거관리행정지원	예비금	예비금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최소한 한 개는 반드시 선택하시오. 해당사항에 O 표시)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O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년 결산	2023년 예산 본예산(A)	2024년		증감	
			요구안	확정(B)	(B-A)	(B-A)/A
예비금	235	260	260	196	△64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예비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명선거추진활동 및 선거·정당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부족경비 또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 지원

2) 사업개요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8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비)

② 추진경위

- 선거관리위원회·국회·대법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하는 경비
- 공정한 선거관리 및 선거·정당사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명선거관리활동 경비, 선거대책경비, 대외기관 활동비,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경비 또는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부족한 경비 등에 활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사업기간 : 단년도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360	260	260	260	196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보조, 용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용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3) 사업 집행절차

- | |
|--------------------------------------|
| · 예측하지 못한 소요, 부득이한 사업추진 소요 등 발생 시 집행 |
|--------------------------------------|